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-020호

2026년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모집 공고

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
2026년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일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

나. 사업내용

○ 사업자가 경기도 베이비부머를 유연한 일자리(주15시간~주36시간 미만)에 채용 시, **1인당 월 40만원씩** 근로자 안전망 경비* 지원

*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(필수), 근로환경개선비, 교육훈련경비, 인사노무관리비 등

다. 모집대상

○ 근로자 : 50세 이상 ~ 65세 미만* 도민 800명 내외
* 1962년~1976년 출생자

○ 사업자 : 경기도 소재 기업, 비영리 법인, 개인 사업자 등

라. 지원내용 :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사업자에 지원

- 지원금 신청 : 매월 20일~매월 마지막일까지 직전월 근로분 지원금 신청

※ 신청기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. 신청기한 경과시 미지급함.

- 지원금 지급시기 :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까지 지급

〈지원금 신청 체계 예시〉

10월 근로에 대한 지원금 (10.1.~10.31.)	▶	지원금 신청기간 11.20. ~ 11.30.	▶	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 12.1. ~ 12.31.

※ 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한달 만근(월 시작일~종료일)을 충족하여야 함.

마. 지원기간 :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 (단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)

※ 2025년도 라이트잡 참여 근로자 또한 2025년에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(단, 2026년 공고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)

2 참여자격

가. [사업자] 참여 자격 : ①~② 조건을 모두 충족

①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

※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, 지점,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

②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
<참여자격 제외대상>

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출자·출연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기업
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

③ 일반유흥·무도유흥·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
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

* 사업주 확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⑤ 중앙정부/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

⑥ 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(재가 서비스 등)

⑦ 참여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파견직인 사업자

⑧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

⑨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자

나. 근로자 자격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
○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이상 65세 미만인*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에 체류지를 등록 또는 신고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외국인

*1962년~1976년 출생자

○ 2025년 라이트잡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근로자 및 2025.12.2. 이후 채용된 근로자

○ 동일 사업자 내 라이트잡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 재참여 불가

○ 파견업에 종사하는 파견직 근로자 제외

○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제외

3 참여방법 및 지원조건

가. 근로자 채용

○ 사업자 ①자율 채용 또는 ②재단 매칭 요청 택1

① 자율 채용 : 사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자 채용 후 지원금 신청

② 매칭 운영 :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 채용이 어려울 시 재단 라이트잡 전담 직업상담사에게 근로자 매칭 요청 가능

※ 직업상담사의 알선 매칭 및 잡아바 라이트잡 전용채용관 등 활용

■ 사업참여(매칭) 참여방법	<기업QR>	<근로자QR>

○ 모아폼 운영

※ 모아폼링크 <기업> https://moaform.com/q/sFzgMo / <근로자> https://moaform.com/q/4GDnWG

- (1단계) 모아폼 링크를 통해 구인 희망 기업, 구직 희망 예비근로자 모집
- (2단계) 기업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단 상담원 근로자 선별에 따른 채용/입사 의사 타진 및 직무 관련성 등 확인 후 매칭

※ 모아폼을 통해 구인/구직 희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칭 성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24(워크넷) 사이트를 통해 구인 구직 적극 알선

- (3단계) 채용/입사 의사 확인 기업/근로자 해당 기업 자체 면접을 통해 결정

나. 근로계약 체결

○ 사업자와 근로자 간 자율 체결 (근로기준법 준수)

○ 라이트잡 근로자 법적 지위 : 근로기준법 제2조(정의) ①항에 따른 근로자

○ 주 15시간 ~ 주 36시간 미만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

○ 근로계약기간 만 6개월 이상으로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

다. 4대 사회보험 가입

○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 필수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- 단, 관계법령 등에 의해 허용되는 가입 예외사항은 인정

< 가입 예외 예시 >

1)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실 연령 만60세('26년 기준 1966년생)

2) 공적연금(공무원, 사학, 군인, 별정우체국 연금) 수급자(예정자)

3) 건강보험의 경우 기초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

라. 임금 지급

○ (임금수준) 2026년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 이상 지급 필수(주휴수당 포함)

단, (붙임1)에 해당하는 직무*는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(시급 12,552원)

*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(제2025-45호, 고용노동부 고시)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참조

- (최저임금 예시) 시급 10,320원

구분	주 15시간	주 24시간*	주 30시간	주 35시간
근로시간	월 79시간	월 126시간	월 157시간	월 183시간
월 임금(이상)	815,280원	1,300,320원	1,620,240원	1,888,560원

- (생활임금 예시) 시급 12,552원

구 분	주 15시간	주 24시간*	주 30시간	주 35시간
근로시간	월 79시간	월 126시간	월 157시간	월 183시간
월 임금(이상)	991,608원	1,581,552원	1,970,664원	2,297,016원

<주 24시간 기준, 월 임금 산정 원칙>

1. 주단위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
2. 주 근무시간 24시간인 경우, 주휴시간은 (24시간/40시간 x 8시간)으로 4.8시간으로 계산
3.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(24시간 + 4.8시간) = 28.8시간으로 산출
4. 28.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.345주를 곱하면 = 28.8시간 x 4.345주 = 125.136시간으로 계산
5. 최저임금 위반 방지로 시간 단위 올림으로 계산하면 126시간으로 계산
6. 126시간 × 최저임금 10,320원 = 1,300,320원

○ **(임금지급)** 사업자가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**(붙임2)**

- 임금 지급에 따른 임금대장 및 지급확인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

마. 근로자 지원

※ 필수가 아닌 사업자 자율 운영, 단 근로자 지원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 기업 현장 실사 시 교육, 근로환경개선, 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한 독려 및 현황 파악 예정

○ 근로자 교육

- 목적 :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자율시행
- 내용 :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,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

※ <참고> 교육 운영이 힘든 사업장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 안내
꿈날개 (www.dream.go.kr)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직업교육 > 온라인과정 수강

○ 근로환경 개선

- 목적 :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시행
- 내용 : 해당 사업장내 근로환경 안전 및 근로자 휴게 시설 등에 대한 환경 개선 적극 실천

○ 인사노무 관리

- 목적 : 노동법상 근로자 보호 및 장기재직을 위한 근로자 운영 체계 지원
- 내용 : 근로자 임금, 복지, 후생 등 노동법으로 보호 되는 인사노무 관련 관리 수행

4 지원금 신청 및 지급

가. 지원금 신청

○ **(신청기간) 매월 20일부터 ~ 매월 마지막일*까지 직전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**

※ 신청기한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. 신청기한 경과시 미지급함.

○ **(신청방법)** 사업주 잡아바 어플라이 로그인 후 라이트잡 전용 접수 페이지에 관련 서류 제출

- 지원금 신청서류 : 모든 서류는 근로 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

잡아바 어플라이	https://apply.jobaba.net

○ **(필수)제출서류 : 모든 서류는 근로개시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
순번	서류명	목적	비고	
1	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	사업자/근로자 정보, 지원금 현황파악	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	
2	급여이체내역서	임금 이체 확인용	금융거래 양식	
3	임금지급 대장	임금 산출 확인용	사업장 자체 양식	
4	사업자등록증 사본	경기도 사업장 확인용	고유번호증 가능	
5	기업통장 사본	지원금 입금 확인용	금융사 양식	
6	근로계약서 사본	근로계약 관계 확인용	**사업장 자체 양식** **※ 근로시간(휴게시간 구분), 월 임금액(주휴수당 포함), 사업장(사업주) 및 근로자 날인, 근로자 직무, 근로계약 기간, 근로계약 체결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**	
7	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	근로자 정보 이용 동의 확인용	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다운로드	
8	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	근로자 경기도민 확인용	정부24 및 행정복지센터 발급	
9	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	근로자 4대보험 가입 확인용	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※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과 동일하여야 함	
10	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내역	근로자 직무명(코드) 확인용	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 토탈서비스 발급	
11	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**(최초 1회만 제출)**	사업자 납세의무 확인용	국세	홈텍스, 정부24, 주민센터
			지방세	위텍스, 정부24, 주민센터

○ **(서류 적격 심사) ※붙임3. 지원금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참고**

- 라이트잡 심의위원회를 통한 증빙서류 적격 서면 심사
- 매월 접수 마감 이후 익월 한 달간 서류 검증 후 지원금 지급
- 이외 서류로 확인 불가한 자격은 별도 플랫폼을 통해 검증

나. 지원금 지급

○ **(지원금 금액)** 근로자 **1인당 월 400,000원** 사업자에게 지원

※ 최초 지원받는 근로월은 한달 만근(월 시작일~종료일)을 충족하여야 함

상황	채용일별 구분	근로 계약	지원자격	지원금 신청	지원금 지급
1	'25.12.2. 채용	A기업이 B근로자와 '25.12.2.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했다면?	'25.12.2.일부터 한달 만근 필수 '26.1월근로분(1.1.~1.31.근로분) 부터 신청 가능	'26년 2.20.~2.2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직전월 ('26.1월 근로분) 신청가능	서류검토 후 '26.3월말 지원급 지급
2	매월 1일 채용	C기업이 D근로자와 '26.6.1.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했다면?	'26.6.1.일부터 한달 만근 필수 '26.6월 근로분(6.1.~6.30.근로분) 부터 신청 가능	'26년 7.20.~7.31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직전월 ('26.6월 근로분) 신청가능	서류검토 후 '26.8월말 지원급 지급
3	매월 2일~ 매월 마지막일까지 채용	E기업이 F근로자와 '26.6.2.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했다면?	'26.6.2.일부터 한달 만근 필수 '26.7월 근로분(7.1.~7.31.근로분) 부터 신청 가능	'26년 8.20.~8.31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직전월 ('26.7월 근로분) 신청가능	서류검토 후 '26.9월말 지원급 지급

※ 퇴사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가 라이트잡 사업 지원금 지급액인 4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

< 4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법 >
- 산식 : 40만원 ÷ 해당월 총일수* × 근로자의 해당월 실제 근무일 수
*예)2월 ⇒ 28일, 3월 ⇒ 31일, 4월 ⇒ 30일
※ 재단 급여 지출 기준을 적용하여 월마다 다르게 적용

○ **(지원한도)** 사업자 별로 **월별 최대 30명까지만 지원** 가능

○ **(지원기간)** 근로자 기준 **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1년까지**

※ 최대 1년 지원이 원칙이나, 예산 소진 또는 도 재정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(지원금 신청 선착순)

※ 2025년도 라이트잡 참여 근로자 또한 2025년에 최초 지원받은 근로월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

(단, 2026년 공고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)

○ **(지급방법)** 지원금 신청월의 다음달까지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

※ 라이트잡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관계이므로 재단의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

4 현장점검

○ **(목적)** 라이트잡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정상적인 근로관계 확인

- 지원금 부정수급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
- 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확인 및 개선 의견 수렴

○ **(운영기간)** 2026. 3. ~ 2027. 3.

○ **(운영방법)** 라이트잡 근무조건, 근무환경(장소), 교육여부 등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근무 상황 등 점검

5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

가. 기업 선정 취소 기준: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

○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(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)

○ 참여자격 제외 기업 또는 부적격 근로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
○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
나. 지원금 지원 중단 기준

○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단이 안내한 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

○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
6 참여안내 및 문의

○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)270-9941

7 부칙

○ 본 공고문의 사업자·근로자 참여자격, 참여방법 및 지원조건,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현황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급한다.

붙임1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사업 생활임금 적용 직무

※ 고용창출장려금.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(제2025-45호, 고용노동부 고시)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참조

<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생활임금 적용 직무(29개) >

한국고용직업분류			
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		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	
014	미용・여행・숙박・음식・경비・청소 관리자	617	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
232	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	622	자동차 운전원
523	숙박시설 서비스원	624	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
524	오락시설 서비스원	704	건설・채굴 기계 운전원
531	주방장 및 조리사	705	기타 건설 기능원(채굴포함)
532	식당 서비스원	706	건설・채굴 단순 종사자
542	경비원	861	섬유 제조・가공 기계 조작원
550	돌봄 서비스 종사자	862	패턴사, 재단사 및 재봉사
561	청소 종사자	863	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
562	세정원 및 방역원	890	제조 단순 종사자
563	가사 서비스원	901	작물재배 종사자
564	검침・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	903	임업 종사자
614	텔레마케터	904	어업 종사자
615	판매 종사자	905	농림어업 단순 종사자
616	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		

붙임2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근로시간 별 최소 임금액

○ 최저임금 기준 (시급 10,320원)

주 근로시간	주휴시간	월소정 근로시간	월 최소 임금액(원)
15	3	79	815,280
16	3.2	84	866,880
17	3.4	89	918,480
18	3.6	94	970,080
19	3.8	100	1,032,000
20	4	105	1,083,600
21	4.2	110	1,135,200
22	4.4	115	1,186,800
23	4.6	120	1,238,400
24	4.8	126	1,300,320
25	5	131	1,351,920
26	5.2	136	1,403,520
27	5.4	141	1,455,120
28	5.6	146	1,506,720
29	5.8	152	1,568,640
30	6	157	1,620,240
31	6.2	162	1,671,840
32	6.4	167	1,723,440
33	6.6	173	1,785,360
34	6.8	178	1,836,960
35	7	183	1,888,560

○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 (시급 12,552원)

주 근로시간	주휴시간	월소정 근로시간	월 최소 임금액(원)
15	3	79	991,608
16	3.2	84	1,054,368
17	3.4	89	1,117,128
18	3.6	94	1,179,888
19	3.8	100	1,255,200
20	4	105	1,317,960
21	4.2	110	1,380,720
22	4.4	115	1,443,480
23	4.6	120	1,506,240
24	4.8	126	1,581,552
25	5	131	1,644,312
26	5.2	136	1,707,072
27	5.4	141	1,769,832
28	5.6	146	1,832,592
29	5.8	152	1,907,904
30	6	157	1,970,664
31	6.2	162	2,033,424
32	6.4	167	2,096,184
33	6.6	173	2,171,496
34	6.8	178	2,234,256
35	7	183	2,297,016

붙임3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지원금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

지원금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		
기업 조건	1	사업장의 경기도 소재 ※ 지점, 대리점, 분점 등 경기도 소재 인정
	2	사업장의 형태 국가 교육기관, 공공기관 등이 아닌지
	3	사업장의 업종이 유흥업, 사행성 등이 아닌지
	4	근로자 고용계약 형태 - 파견직, 아웃소싱 등 아닌지
	5	근로자 인건비를 국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지 ※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, 국민건강보험 재가서비스 조회 예정
	6	정부 유사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 채용(고용지원금) ※ 중복수혜 여부 :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등 조회 예정
	7	사업주가 임금체불 기업이 아닌지 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명단 확인 예정
	8	사업주가 국세/ 지방세를 완납했는지
근로자 조건	9	근로자가 아래 제외 대상이 아닌지 ※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관계, 동일 사업장 내 라이트잡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
	10	근로자 주소지 경기도 주민등록 여부 ※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가능
	11	근로자 연령 5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(1962년생~1976년생)
근로 계약 조건	12	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※ (예시)국민연금 가입 예외 : 만60세이상, 정부 공적연금 수급자(예정자) ※ (예시)건강보험 가입 예외 : 의료급여 수급권자
	13	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여부
	14	근로시간 주15 ~ 36시간 미만 유연한 일자리 (휴게시간 포함여부)
	15	근로개시 이후 1달 이상 만근 여부(월 시작일~종료일)
	16	직무별로 최저임금 또는 경기도 생활임금을 주고 있는지 (주휴수당 지급여부)
	17	근로자 직무 코드에 맞는 임금 차등(최저임금, 생활임금)이 맞는지